

[일련번호 : 18]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통장후보자 심사 선정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통장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본표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집계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며, 통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를 원칙으로 하되,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장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신청서, 서약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자원봉사실적서(해당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통장 후보자 심사·선정 시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부적정하게 채점하였음에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심사를 완료하거나 통장신청서를 제출할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류가 미비하여도 접수하는 등 통장심사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선정 여부 영향 없음)

[표] 통장후보자 심사 선정 서류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일(심사일)	신청자명	지적사항
1	2022.12.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제출
2	2023.10.25.		최근 3년간 봉사활동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표에서 15점(200시간이상)으로 채점함 (감사일 이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3	2023.11.21.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통 거주기간이 5년 미만(배점6점)이나,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평가하여 12점으로 채점함
4	2024.3.20.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미제출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